

의안번호	2207028
의 퇴 인	김정호 의원
회 답 일	2025. 3. 12.
추계번호	24A6361

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0조의5(원료비 연동제)	○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원료비 연동제가 유보된 기간의 실제 도시가스 공급량에 원료비 연동제를 적용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스도매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을 실시할 수 있음(제3항)	재량규정
2	안 제20조의6(공익서비스비용의 부담)	○ 가스도매사업자의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경영 손실, 재정 부담 등의 비용(이하 “공익서비스 비용”이라 한다)은 국가 또는 해당 공익서비스를 직접 요구한 자(이하 “원인제공자”라 한다)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음(제1항)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등 근거 규정
1	안 제20조의5(원료비 연동제)	○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20조의6(공익서비스비용의 부담)	

2. 상세 사유

가. 원료비 연동제(안 제20조의5)

- 안 제20조의5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가스도매사업자에 대해 원료비 연동제 유보에 따른 손실을 지원하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원료비 연동제란, “도시가스 요금을 국제유가, 환율, 세금 및 기타 비용을 고려하여 산정한 천연가스 도입비용(이하 “원료비”라 한다)과 일정한 주기로 연동하여 산정하는 제도를 말함”(안 제2조제13호)

-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원료비 연동제가 유보된 기간의 실제 도시가스 공급량에 원료비 연동제를 적용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스도매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(안 제20조의5제3항)

□ 다만, 원료비 연동제 유보에 따른 손실 보전금을 추계하기 위해서는 향후 원료비 연동제가 유보될 기간과 해당 기간의 원료비 손실 등을 추정 하여야 하는데 현시점에서 이를 추정하는 데 한계가 있음

- 참고로, 현행 원료비 연동제의 유보에 따른 한국가스공사의 원료비 미수금(민수용) 현황은 2024년 3분기 기준으로 13조 8,883억원 규모임

[표 1] 한국가스공사 원료비 미수금 현황

(단위: 억원)

	'20	'21	'22	'23	'24 3분기
민수용	1,941	17,656	85,856	130,110	138,883
상업용	4,596	4,410	3,948	6,970	4,606
도시가스발전용	374	319	81	787	303
합계	6,911	17,656	85,856	130,110	143,792

주: '24년 4분기 결산 진행 중

자료: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, 「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」, 2025. 2.

나. 공익서비스비용의 부담(안 제20조의6)

□ 안 제20조의6제1항에 따라 가스도매사업자가 공익서비스비용을 국가 등 원인제공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
- 공익서비스란, “도시가스사업자가 영리목적의 영업활동과 관계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나 공공목적 등을 위하여 제공하는 가스공급사업을 말함”(안 제2조제12호)
- 개정안은 가스도매사업자로 하여금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경영 손실, 재정 부담 등의 비용(공익서비스비용)을 국가 또는 해당 공익서비스를 직접 요구한 자(원인제공자)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0조의6제1항)

- 다만, 개정안은 공익서비스 원인제공자의 부담을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, 부담 규모 또한 공익서비스비용의 “전부 또는 일부”로 규정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- 참고로, 가스도매사업자와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장애인,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원 현황은 2024년 11월 말 기준으로 4,321억원 규모임

[표 2]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원 현황

(단위: 가구, 백만원)

	가구수	도매 경감액	소매 경감액	합계
2022	1,615,007	114,159	49,045	163,204
2023	1,751,048	461,716	51,185	512,901
2024.11.	1,745,133	389,970	42,148	432,118

주: 경감가구수는 매년말 기준, 경감액은 1~12월 누계

자료: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, 「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」, 2025. 2.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추계세제총괄과	윤주철	권아영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윤주철	02-6788-4655	yjc@nabo.go.kr